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33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박민규 · 정태호 · 민병덕
윤준병 · 이주희 · 김남희
박정현 · 김동아 · 손 솔
이정문 · 민형배 · 이춘석
김용만 · 조승래 · 이재관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 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을 “2년(「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